■ 저작권법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0. 8. 4.>

업무정지의 세부기준(제5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각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.
- 나.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업무정 지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 다.
 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 또는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다.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업무정 지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
 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업무정지 기준
가.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에 법 제105	법 제109조	업무정지
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	제1항제9호	3개월
하게 된 경우. 다만, 법 제105조제7항제7호		
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		
표자 또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		
외한다.		
나. 법 제105조제9항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	법 제109조	업무정지
초과하여 받은 경우	제1항제1호	1개월
다. 법 제105조제9항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외	법 제109조	업무정지
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	제1항제2호	3개월
라.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통합 징수 요구를	법 제109조	업무정지
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	제1항제5호	3개월
우		
마. 법 제106조제7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사	법 제109조	업무정지
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	제1항제6호	1개월
바.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	법 제109조	업무정지
유 없이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	제1항제3호	1개월

사. 법 제10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	법 제109조	업무정지
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제1항제4호	3개월
아. 법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	법 제109조	업무정지
따른 조사 및 자료요청에 불응하거나 이를	제1항제7호	3개월
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	
자. 법 제108조의2에 따른 징계의 요구를 받고	법 제109조	업무정지
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	제1항제8호	3개월
경우		